

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,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방지 및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「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나.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
- 다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6. 8. 3. ~ 8. 7.

○ 제출방법 : 방문(주말·공휴일 제외)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

○ 기재내용 : 붙임 서식 참조

○ 제출기관 : 하남시의회(의회운영 전문위원실)

- 주 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, 하남시의회)

- 전 화 : 031-790-6510

- F A X : 031-790-6529

- 홈페이지 : <https://council.hanam.go.kr/> (의안정보 → 조례안 예고)

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
2. 위촉직 위원 :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⑦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

및 운영 조례」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하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제11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~ ③
(생 략)

<신 설>

제12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
출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
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
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
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·
의결에서 제척되며, 그 위원은 스
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
회피하여야 한다.

⑦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
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
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한 바에
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⑧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1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
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
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
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
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
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
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
결과보고서를 하남시의회 홈페이
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